

아동 대상 성범죄 조사절차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진술타당성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의 형사사법적 활용가능성

이 수 정*

차 례

1. 성범죄의 발생추세
2. 현행 성범죄 통제정책의 현황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3. 외국의 성폭력 조사제도
4.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5.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한 현직 판사의 의견에 대한 실증연구
6. 논의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범죄통제 정책의 집행에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일단 현재의 정책적 방향을 분석하고 법원의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 추이를 살펴보았다. 국내 제도에서 관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 관련된 외국의 제도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국내 사법제도에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대안으로서 제안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아동 피해자 진술타당성분석 및 감정제도에 대해 현직 판사들은 어떤 의견을 지니는지 알아보았다. 답변에 응하였던 모든 판사들은 피해 진술에 대한 진술타당성 분석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주제어 : 아동 대상 성폭력, 진술타당성분석, 전문가증언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1. 성범죄의 발생추세

국내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세는 날로 가속화 되고 있다. 경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현황에서 강력범죄 중 강간만이 전년도에 비해 19.6%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¹⁾ 강간 발생 건수는 2002년도 6,119건이던 것이 2006년도 8,759건으로 매해 평균 9%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한 해 강간 발생 건수는 13,108건으로 그 중 남성 피해자는 507명이고 여성 피해자는 12,403명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5세 이하 강간 피해자는 1,665명으로 12.7%에 해당되었으며, 이 중 12세 이하 아동 강간 피해자는 932명으로 전체의 약 7%에 해당되었고, 6세 이하 강간 피해자도 170명에 달했다.²⁾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6년 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내용 제11차 공개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수가 412명으로 2001년 1차 공개(74명)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지표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이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즉 성범죄의 피해는 더 이상 성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이한 현상은 일회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쇄성범죄 등이 최근에는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심각한데, 2007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대학생이나 성인 피해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일회성 피해를 입었던 데 비해 유아(3%)와 청소년(초등 5%, 중등 4%, 고등 7%)은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³⁾ 일례로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교단에서 물러난 뒤 6년 만에 다시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1년 간 여자 아이들을 성추행 해오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 여자 아이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성추행 혐의로 붙잡히는 사건 등 아동 대상 성도착에 있어서는 상습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객관적 지표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양태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양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준다.⁴⁾ 그림 1에는 지난 십년간 발생하였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 같은 기간 살인과 절도는 각각 1.1%, 2.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강도와 폭력은 오히려 각각 6.4%, 1.2% 줄었다 (경찰청 홈페이지, 2007).

2) 대검찰청 (2007).

3) 한국일보(2007년 10월 1일) 기사에서 인용함.

4)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2006).

한 성범죄의 기소율이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재구성되어 제시되어 있다. 특히 2002년,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피해발생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물론 이 같은 현상은 2000년 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아동·청소년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민감도가 증가한 때문일 수도 있다. 허나 동시에 형사사법적 통제가 엄격해졌음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한 시점인 2-3년 후에도 여전히 급증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추세가 실제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특히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성인의 성적 징후를 지니게 되는 청소년기 후기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어린 또래인 7세 이상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다르지 않다는 점은 진정으로 국내의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발생실태에 심각성이 내재하며 이 같은 심각성은 단지 특정 범죄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문제임을 인지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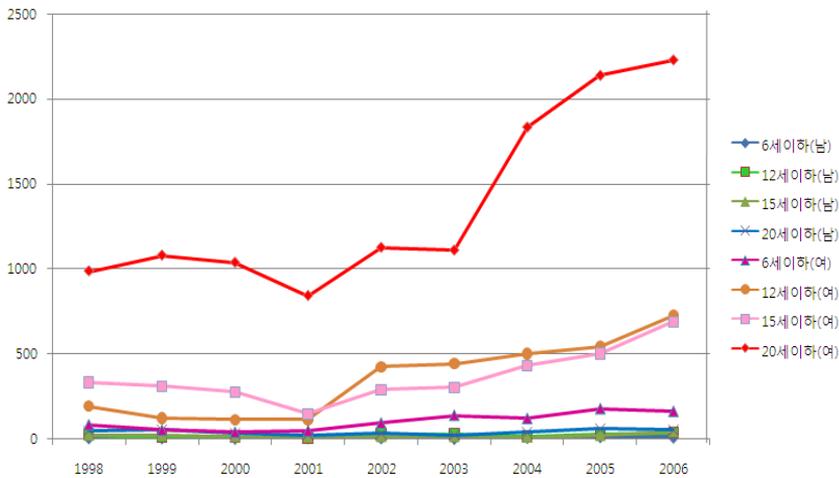


그림 1. 1998년 이후 미성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강간피해 발생건수

출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2006)

2. 현행 성범죄 통제정책의 현황과 집행과정 상의 문제점

최근 법무부는 이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통제를 위해 다양한 형사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재범의 위험 요소를 갖는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별도의 형사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2008년도부터는 이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집행하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권한을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적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10월부터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게는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구금 이후에도 재범위험성이 농후한 성범죄자들을 사회 내에서 통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범죄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강간의 경우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올려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만드는 법률안과 『치료감호법』의 3항에 성범죄자들 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경우 15년 범위 내에서 수용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라 판단되는 점은 이 모든 형사정책적 대안들이 유독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처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적법성을 기준으로 볼 때는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허나 표 1을 보면 성범죄자에 대한 일련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사절차가 애초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⁵⁾

표 1에는 지난 몇 년간의 성범죄자에 대한 입건 건수와 그에 따른 구속 건수가 제시되어 있다. 법원은 지난 수년간 구속적부심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 수의 사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권고하여 왔다. 이는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굳이 필요가 없음에도 구속수사를 집행하였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성범죄에 대하여서도 다르지 않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여 성범죄로 입건되는 사람들의 수는 앞서 제시된 통계치들과 일관되게 매년 현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

5) 법무부 (2008). 국무회의 보고자료.

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 중 구속된 사람들의 수는 2003년도 이후 매년 줄어왔다. 이와 같은 추세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즉 성범죄에 대한 현재의 형사정책은 유죄가 입증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이중 삼중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아직 조사과정 중에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전혀 차등을 두지 않고 구속요건을 까다롭게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성범죄자 입건 추세 (괄호 안 구속인원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성범죄	10,364(4,369)	11,648(4,168)	11,250(3,467)	13,277(3,576)	12,363(2,471)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637(391)	627(374)	684(337)	731(303)	702(257)

출처: 2008년도 법무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구속을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율에서 역시 이와 같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검찰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불기소율(표 1)은 2003년도 19.76%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26.56%까지 늘어났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왜 솜방망이라고 비난받는 것인 그 연유를 가히 짐작하게 된다.

표 2. 지검별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접수·처리 현황

연도	송치 사건 수	불기소 건수	불기소율(%)
2003	754	149	19.76
2004	755	135	17.88
2005	799	165	20.65
2006	844	183	21.68
2007	851	226	26.56

출처: 2008년도 대검찰청 정기국회 보고자료

이 대목에서 성범죄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한, 진수희 전 의원의 지적을 살펴보는 일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⁶⁾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6%에 불과하다. 그나마 신고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45% 미만이고, 실형률은 그보다 더 낮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수사의 소홀함과 편파성을 이겨내고, 부당한 합의를 거부하고, 그 오랜 과정에서의 2차 성폭력을 감내해낸 단 1%의 위대한 피해자만이 가해자에게 형량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1%의 가해자만이 범죄자로서 인정되고, 그 범죄자의 또 일부만이 전자팔찌를 차게 된다는 것이다.”

진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근거 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보고서(199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96년도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 3위로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2.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은 2008년도 5월부터 2009년도 1월까지 전국 9847가구의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1만3608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⁷⁾ 이에 의하면, 성폭행 피해자의 93%가 피해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⁸⁾

물론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데에는 개인적 수치심이나 성을 금기시하는 사회의 태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이유 중 그래도 국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을 지니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 받기는 커녕 자신만 더 큰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고민은 사실 연령이 어려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성범죄 피해 당사자가 아동인 경우 신고 및 수사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데, 특히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들의 부모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어떻게든 이를 덜어줄 수 있는 사법절차의 필요성은 절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의 성폭력 조사제도

지금까지와 같은 문제 상황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내 경찰

6) 한겨레 21, 2006년 3월 21일자.

7) 보고서 미출간

8) 한겨레신문 5월30일자

및 검찰과 법원의 업무부하량을 고려해 볼 때 성범죄의 피해자가 다만 아동이라 하여 사건의 처리에 무조건 우선성을 둘 수도 없는 노릇일 것이며 그렇다고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 절차 없이 피의자를 무조건 구속부터 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허나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행 조사절차를 검토해보면 구속 요건을 찾아내야 하는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기존의 수사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잔뜩이나 위축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다그쳐 진술하게 한다거나, 또는 아동의 피암시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유도신문을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조차 왜곡하게 되는 등의 실수가 국내 사법제도 내에서는 비밀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민유숙, 2009). 그러나 최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사법부의 유책판단이 과도하게 신체적 상해와 DNA 등 물적 증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많은 경우 기존의 성인을 상대로 한 강간죄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신체적 상해의 증거에만 의존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아동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이에 대한 아동의 피해 진술에 대한 증거력 부여가 매우 필요하다. 이때 국내법의 경우 유죄 사실 판단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아동 진술의 일관성, 즉 반복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변경 없는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에 대한 반복된 신문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건의 조사 시 낮은 조사 상황을 아동 친화적 환경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시도해왔다. 특히 미국은 아동의 반복 진술을 막기 위하여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여 그것을 증거로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Faller, 2007, 2009). 또한 아동이 불가피하게 법정으로 출두하였을 시 폐쇄회로를 통해 독립된 장소에서 아동이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법정은 전문변호사를 지정하여 피해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피해 사실 조사 이외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법정은 한 발 더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가해행위를 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신문할 권리까지를 허용하는 제도를 최근 도입하기도 하였다(이부스키 마코토, 2009).

국내의 경우에도 2003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반복진술이나 대질신문 등의 가학적 절차에서 벗어나 한 차례의 비디오녹화 진술을 통해 수사절차를 마치고,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 때에는 법정 진술을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표창원, 2007). 또한 2006년에는 진술녹화 의무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청소년들에게도 보다 포괄적으로 진술녹화제도를 적용하게 되었

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진술은 여러 가지 조건상의 미비점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민유숙, 2009; 황인정, 2006). 예컨대 조사단계에서 아동 대상 조사에 경험이 있는 수사관들의 유도신문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거나(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 61027 판결) 혹은 조사를 대행하였던 상담기관의 실무자가 적법성이 취약하다(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고합278 판결)는 이유로 녹화된 진술이 증거력을 갖지 못한다거나, 상담 전문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는 이유 등으로 아동의 피해 진술은 녹화가 된 경우에도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법정이 피해자의 진술 수집과정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은 법원의 조사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심(민유숙, 2009)이며, 이와 같은 법정의 의구심을 줄여주는 한 가지 대안은 국내 사법제도 내에 법정이 인정하는 전문가 조사개입 및 법정에서의 증언제도를 도입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전문가들을 개입하게 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을 보조하는 제도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문가의 증언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이는 DNA가 발견되지 않는 많은 성범죄 사건들, 즉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서 채택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전문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육체적 또는 의학적 증거와 일치하는지 또한 진술의 특성들이 전형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확인한다. 미국의 일부 법원은 아동 피해자의 행동양식이 성범죄 피해와 “일치(consistent with)” 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증언을 허용하며 이에 대한 증거력을 인정한다(채규만, 2008). *Bardy v. State*(540 N.E.2d 59) 판례에서 미국의 주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행동과 “일치”한다는 전문가의 증언을 인정하였고, *State v. Kallin*(877 P.2d 138, Utah 1994) 판례에서 법원은 불면증, 식욕부진, 피해자의 조부에 대한 두려움, 엄마에게 매달리는 행위,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행위는 성적 학대와 일치하는 증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적이 있다. 즉 본인의 진술 이외에도 전문가들의 판단 여부를 사실 확인의 보조적인 증거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가들의 판단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외에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경험과 일치하지 않으며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논박할 경우에도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다고 한다(Steele & Faller, 2009).

전문가 증언에 있어 제기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전문가가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미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 702조는 증인이 “지식, 기술, 경험, 훈련 또는 교육”에 의하여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최소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가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미국 법정의 경우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전문가가 피해사실 평가 및 그에 대한 전문가 진술을 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아동을 직접 법정에서 불러내어 진술토록 하기보다는 피해사실을 일차적으로 조사했던 공인된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대변토록 한다(Carnes, 2000). 이를 위하여 Children’s Institute International Center와 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에서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 조사과정 및 심리치료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Steel & Faller, 2009).

이와 같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알려진 성범죄 피해아동 조사기법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방법은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 이하 CI)기법이다. 독일에서 개발되어 최근에는 유럽 뿐 아니라 호주 등에서도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4 가지 원칙에 따라 면담을 실시하도록 한다(Geismelan, Fisher, MacKinnon, & Holland, 1986). 이들 방법은 대부분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 권고되었던 방법으로서 (1) 전체 맥락 회상하기(Bower, Gilligan & Monteiro, 1981; Malpass & Devine, 1981), (2) 사소한 것까지 모두 보고하기(Smith, 1983), (3) 완전히 다른 순서로 보고하기(Bower & Morrow, 1990; Mandler, 1980; Whitten & Leonard, 1981), (4) 다른 관점에서 보고하기(Anderson & Pichert, 1978; Bower, 1981; Bower & Gilligan, 1979; Bower, Black and Turner, 1979; Firstenberg, 1983)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경찰조사기법과 CI를 비교하였을 때 거의 35% 정도 더 정확하게 증인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회상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근에도 CI의 우수성은 여러 실증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많은 법정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아동 성폭력 사건의 조사절차에 전문가들을 참여토록 하는 것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얻은 진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술타당성분석(SVA)은 외국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국내의 사법제도 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유용성을 인정받는 추세이다(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2009. 7. 31. 2009고합176 결정 등 참조). 진술타당성(SVA)은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Vrij, 2000). 준거 기반 내용 분석(Criterion-Based Content Analysis; 이하 CBCA)과 사실성 모니터링(Reality Monitoring; 이하 RM)기법이 진술타당성 분석(SVA) 분야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다. 이중 CBCA는 인지심리학자인 Undeutsch(1984)의 가설, “실제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진술은 허구 또는 상상에 기초한 것과는 내용의 질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란 전제로부터 고안되었다. CBCA는 19가지 판단 기준을 토대로 하여 성범죄 피해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밝힌다. 이들 판단기준은 논리적 구조, 이야기의 비구조화 정도, 세부 묘사의 양, 문맥의 깊이, 상호작용 기술 등등이다. Vrij(2000)는 CBCA의 진위 판별능력은 65%에서 90%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문맥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CBCA에 비해 RM은 상상으로 지어낸 사실과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지각적 경험에 근거하여 구별해내는 방법으로서 Johnson과 Raye (1981)의 지각경험에 대한 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방법은 특히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각이나 색상이나 소음 등의 정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진술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진실된 진술은 더 많은 맥락 정보와 감각적인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Alonso-Quecuty, 1992).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의 정도를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들도 아동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은 우선 아이들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스스로 보고하는 CSAS(Child Sexual Abuse Symptom; 조은경, 2004),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심리전문가의 조사도구인 CSAR-Psy(Child Sexual Abuse Report-Psychologist; 채규만, 2008),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부모 평정 도구인 CSAR-P(Child Sexual Abuse Report-Parent; 채규만, 2008), 그리고 CSBI(Child Sexual Behavior Inventory; Friedrich, 1993), 해부학적 인형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여부를 판단하는 ADBS(Anatomical Doll Behavior Checklist) 등이 있다. 이들 척도들은 앞서 언급한 진술의 신빙성 분석 도구와는 약간 다른 차원을 측정하는데, 주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상증세를 피해사실의 근거로서 다룬다. 예를 들자면 성범죄에 오래 노출된 아동은 행동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에 대한 성적 행동을 사랑받는 행위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Friedrich, 1997; Kendall - Tackett, Williams, & Finkehor, 1993). 따라서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진 아동은 상대에게 친밀감을 느낄 때마나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유혹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성적으로 흥분하여 자위를 하기도 한다고 알려진다. 이 같은 성적 호

기심은 대화 중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TV 등을 보며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코멘트를 하기도 하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아동에게 직접 성적 접촉을 하기도 하고 성적 내용이 포함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이런 행동변화는 보통 보호자에 의해 인지되며 이 같은 행동특성을 표준화된 도구들에서는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Friedrich, 1993).

성적 민감성 이외에 성적 피해는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하는데(김현수 2009), 예컨대 배변 훈련을 마친 경우에도 실수를 하거나 변비를 호소하기도 하며 야뇨증이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행적 행동을 보이며 자기 파괴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며 주의가 산만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도 한다. 혼자 있기를 싫어하고 어두운 곳을 피해 다니며 불장난을 하거나 동물이나 다른 아이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섭식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가출, 약물 등을 복용하기도 하며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다. 심리적 변화 역시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Friedrich, 1997), 우울감, 불안, 사회적 철회 등을 보이기도 하여 학교생활과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일상적인 행동상에 불안정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반면 공격성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상 가해자에게 적개심을 느끼지만 표현할 길이 없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극도의 좌절감과 분노의 표현방식이다. 성범죄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감정 표현을 과도하게 억제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심각성에 대해 부인하거나, 불행한 일과 자신을 격리하고 해리시키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성범죄 피해로 기인한 임상증세에 대한 평가도구들은 이와 같은 증세들을 평가하여 유무의 정도로서 성폭력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한다.

이와 같은 진술타당성분석(SVA) 기법들은 최근 국내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2009년도 경찰청은 서울·경기지역 원스탑센터 다섯 곳을 선정하여 경찰들이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와 지적 지체가 있는 피해자들을 조사할 시 한국심리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개입하게 하고 그들이 추후 아동의 피해진술에 대해 진술분석을 한 결과를 사건 송치 시 함께 첨부하여 보내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이 진술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진술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구성 내용

조항	구성 내용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성폭력 피해 진술의 핵심이 되는 주요 개념들을 아동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도구이다.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감안하여 유아용과 학령기 아동용으로 구분하였고 모든 내용은 그림으로 보다 재미있게 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진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포함된 주요개념은 안과 밖, 신체 부분 명칭, 숫자, 진실과 거짓, 만지다의 총 6개 항목이다.

<p>준거 기반 내용 분석</p>	<p>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Criteria - Based Content Analysis)은 5개의 범주에 19개의 하위 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인지적 능력과 동기적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한다. 개별 준거들은 진술의 진실성 지표로서 허위로 꾸며낸 진술보다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각 0, 1, 2점으로 채점되는데, 총 38점 중 19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p>
<p>사실성 평가</p>	<p>사실성 평가는 지각의 과정에 근거하는 기억과 내부처리에 근거한 기억은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피해자 진술의 내용에 있어 지각적인 정보(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진술의 생생함, 감각기관의 정보, 공간 정보, 시간 정보, 정서와 감정, 이야기의 재구성, 사실성, 인지적 추론의 8가지 준거에 대해 0, 1, 2점으로 채점하여 총 16점 중 8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p>
<p>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p>	<p>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아동과의 면담, 부모 면담, 기타 정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보가 가지는 중요성, 각 정보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진술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정보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함으로써 아동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아동의 진술능력,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 아동의 상태, 기타 정보라는 4가지 범주 하에 구성된 25개 문항에 대해 0점 혹은 1점으로 반응할 때, 총 25점 중 13점 이상이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다.</p>
<p>행동 변화 평가</p>	<p>성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서는 또래 아이들보다 더 조숙한 성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따라서 아동의 성적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평가를 근거로 9가지 범주 27항목에서의 행동변화를 탐지한다. 문항은 0, 1, 2점으로 채점되어 총 27점 중 14점 이상이면 성폭력 피해가 있다고 본다.</p>
<p>타당성 평가</p>	<p>타당성 평가는 이혼이나 재산권 다툼 등으로 인한 부모의 영향, 면담자의 암시 등을 검토함으로써 진술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아동이 평소 성적환상을 갖고 있었는지, 진술을 꾸며내는 것인지, 사건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을 허위 지목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진술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진술 진위 여부, 정신적 상태, 피해 아동의 진술의 의도성 여부, 허위지목 가능성 등 4가지 범주 하에 26개 문항에 대해 0점, 1점, 2점의 3점으로 반응하여 총 52점 중 26점 이하이면 아동의 진술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한다.</p>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진술분석의 결과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입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허나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시범 사례 중 일부 사건은 판결과정에서 진술분석의 결과를 참조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무죄나 양형의 판단에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개입 결과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치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도 가능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직접 아동 성폭력 범죄사건의 재판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 진술분석의 결과를 첨부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일이다. 본 연구는 따라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 4에 포함된 진술분석기법 중 준

거기반내용분석(CBCA)의 결과가 판사들의 유죄 심증과 양형판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하였다.

5.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한 현직 판사의 의견에 대한 실증연구

국내 형사절차 중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 전문가나 실무자들의 견해는 수없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 중에서도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심리특성이 피해 진술 상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전문가증언제도를,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 입증을 위해 진술타당성분석(SVA)을 도입하기를 제안하였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에 의한 진술 분석 결과가 과연 현직 판사들의 유무죄 판단의 심증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현직 판사의 입장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진술녹화제만으로 아동의 피해 진술이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에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⁹⁾

피조사자

아동성폭력 피해자 조사절차에서 피해 진술에 대한 진술타당성분석(SVA)의 제공이 판사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법관 연수에 참여한 13명의 여성 판사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진술조서(부록)를 제공하였다. 두 가지 유형의 진술조서 중 A 유형은 기존의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였으며 B 유형은 동일 진술조서에 대해 진술분석전문가가 증거기반 내용분석(CBCA)를 실시한 내용이 더해져 있었다. 이들 두 유형의 피해 진술에 대해 판

9) 민유숙(2009)은 판례분석을 통해 아동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단은 녹음이나 녹화된 피해 진술에 대해서도 발생을 하는데, 예컨대 진술을 반복하여 녹음·녹화하게 되면서 아동의 피해 진술 내용에 변화가 발생하여 오히려 진술 번복으로서 신빙성을 상실하게 되거나 혹은 조사자의 유도신문 사실이 그대로 녹화되어 그로 인해 피해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등 진술녹화제가 자동적으로 아동의 피해 진술의 증거력을 확보하게 하여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로서의 평균 경력이 7.77년($SD=5.94$)이었던 총 13명의 판사들은 3가지 공통 문항에 대해 답변하였다. 이때 조사에 참여하였던 판사들의 근무지역은 서울 6명, 경기·인천 1명, 기타 지역이 6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연 령	13	35.69	6.31
근무기간	13	7.77	5.94

측정도구

실험 자료로 사용하였던 성폭력 사건

현재 서울 경기지역의 다섯 군데 원스탑센터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적 지체 장애를 지닌 피해자들의 진술 시에는 전문가들을 개입시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진술 분석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는 검찰 송치 시 함께 보내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진술조서의 내용은 이들 사건들 중 가장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성추행 사건을 선정하여 녹화된 진술을 프로토콜 상태로 풀어놓고 인적 사항이나 실험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부록에는 이들 진술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설문의 내용

설문지는 피해아동의 진술조서(문답 형태로 구성된 일반적인 사건조서)가 제시된 유형(이하 'A 유형')과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CBCA분석 보고서가 제시된 유형(이하 'B 유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문항과 CBCA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던 유형 B에서 추가로 제시된 세 문항이 존재하였다.

두 조서 모두에 대해 질문되었던 내용은 첫째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둘째 유죄라고 응답했다면 어느 정도 심증이 가는 것인지, 셋째 해당되는 죄명과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이었다. CBCA가 제시되었던 B 유형의 설문 말미에 추가되었던 세 개의 질문은 첫째 CBCA가 추가된 경우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여겨지는지, 둘째 CBCA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셋째 CBCA가 판결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우선 첫 번째 공통 문항이었던 “제시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13명의 판사 중 12명(92%)이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BCA가 첨부되었던 B 유형의 자료와 진술조서만 제시되었던 A 유형의 자료 모두에 대한 설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죄라고 판단한 12명의 응답자는 본인의 유죄 판단에 대한 심증, 즉 확신하는 정도를 1점부터 5점까지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진술조서만 제시된 A유형에서는 유죄판단에 대한 확신정도에서 ‘있다’ 3명(25%), ‘매우 있다’(2(25%))로 나타난 반면에,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CBCA분석 보고서가 제시된 B유형에서는 ‘있다’ 4명(33.3%), ‘매우 있다’ 6명(5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B유형에서 유죄 확신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 척도로 변환했을 때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_{11}=2.55, p<.05$). 해석하자면 CBCA가 제시되었던 진술 증거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던 판사들의 심증은 더 굳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유죄판단에 대한 심증의 정도

	A유형 N(비율)	B유형 N(비율)
매우낮다	1(8.3)	0(0)
낮 다	1(8.3)	1(8.3)
보 통	4(33.3)	1(8.3)
높 다	3(25.0)	4(33.3)
매우높다	3(25.0)	6(50.0)

그 다음으로 CBCA의 유무가 유죄라고 판단하였던 12명의 판사들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사들에 적어낸 형량에 대해 대응표본을 위한 t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왔는데, 두 집단의 평균 형량은 A 유형 2.75년($SD = 1.29$), B 유형 3년($SD = 1.86$)으로 CBCA가 추가로 제시된다고 하여 형량은 더 길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_{11}=-.40, n.s.$).

CBCA가 제시되었던 B 유형의 설문지에는 추가로 진술타당성분석의 유용성을 묻는 세 문항이 더 있었다. 첫째 CBCA가 추가된 경우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여겨지는지, 둘째 CBCA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셋째 CBCA가 판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세

문항 모두에서 13명의 판사들은 모두 CBCA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유무죄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던 1명의 판사도 역시 진술분석의 결과는 유용하다고 답변하였다.

6. 논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증가추세가 객관적 통계지표 상에서도 확인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현재의 형사사법적 대책이 충분한 범피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탐색하였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 이외에 조사과정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아동의 심리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개입과 이들에 의한 아동 피해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과정의 내실화가 구현되기 위하여서는 법원의 적극적 태도가 필수적인 것인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진술분석의 구체적 사례가 판사들의 의사결정에 과연 도움 되는 것인지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던 판사들의 진술타당성분석(SVA)에 대한 태도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예컨대 주어진 사례의 피고인이 유죄라 확신한 판사들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판사 모두에게 있어 SVA는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웠던 점은 진술타당성분석, 그중에서도 특히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대한 태도였는데, 유죄로 판단을 내렸던 판사들은 CBCA로 재구성된 진술조서의 내용이 자신의 심증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면서도 동시에 CBCA의 제공으로는 양형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매우 재미있는 결과인데, 판사들이 CBCA에 의해 양형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 진술에 대한 내용 분석만으로 사건을 왜곡해서 이해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CBCA는 사건의 내용을 보다 피해자의 차원에서 다시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 판사들의 유죄 심증을 굳히는 데는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진술타당성분석은 유죄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허나 이 같은 결과는 본 논문에 포함되었던 응답자들의 수가 매우 적었다는 점, 그리고 답변에 임한 판사들의 성별이 모두 여성뿐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점을 지닌다. 이 같은 문제는 추후 진술타당성분석이 실무적으로 좀더 활용이 되면 현장에서 보다 많은 사례를 수거할 수 있을 것이기에 추후연구를 통해 해결해 볼 것을 기대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종사하는 판사들의 의견을 묻은 것은 상당한 시사점을 지닌다. 예

컨대 인지력이 충분치 않은 어린 피해자가 혼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이들의 피해 사실 입증과정에 도움을 주는 절차가 어느 정도 적법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사들의 비공식적 의견을 개선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조사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아동 피해 진술에 대한 중립적인 해석자로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이슈는 이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법원의 중립적 위치를 이해하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아동의 피해 진술에 조금이라도 과장이나 왜곡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피해자의 보호자가 취하는 태도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객관적 태도와 공정성에 대한 의지가 전문심리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진술분석에의 수월성은 오히려 이보다는 부차적 요건일 가능성이 크다.

〈참 고 문 헌〉

- 김현수 (2009). 아동성폭력의 영향: 아동,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심리적·정신의학적 영향.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전문과정 교육안, pp. 340-36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민유숙 (2009). 아동피해자진술의 평가에 관한 법원의 관점. 범죄심리사자격관리위원회 공동심포지움 발표논문집, 49-60.
- 이부스키 마코토 (2009). 일본에 있어서의 피해자 참자 제도에 대해. 2009 경찰청·법정심리학회·범죄심리사자격관리위원회 공동심포지움 발표논문집, 29-38.
-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채규만 (2008). 성폭력 피해 아동 행동, 진술 분석제도 및 전문가 참여제도 연구 개발과 시범 운용 계획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경찰청.
- 표창원 (2007). 성폭력 피해사건에 있어 아동의 진술, 주요 쟁점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 개입의 중요성. 해바라기아동센터.
- 황인정 (2006). 자백의 진정성 탐색을 위한 영상녹화조사 연구 : 자백평가에 있어 카메라 초점의 영향 및 심리학자의 역할.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lonso-Quecuty, M. L. (1992). Deception detection and reality monitoring: A new answer to an old question? In F. Losel, D. Bender, and T. Bleisener (Eds.), *Psychology and law: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328-332). New York : Walter de Gruyter.
- Anderson, R. C., & Pichert, J. W. (1978). Recall of previously unrecalable information following a shift in perspective.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7, 1-12.
- Bower, G. H., Black, J. B., & Turner, T. J. (1979). Scripts in memory for text. *Cognitive Psychology*, 11, 177 - 220.
- Bower, G. H., & Gilligan, S. G. (1979). Remembering information related to one's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3, 420-432.
- Bower, G. H., Gilligan, S. J., & Monteiro, K. P. (1981). Selectivity of learning caused by affective stat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0, 451-473.
- Bower, G. H., & Morrow, D. G. (1990). Mental models in narrative comprehension. *Science*, 247, 44-48.

- Carnes, 2000: C. N. Carnes, Forensic evaluation of children when sexual abuse is suspected, 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 Huntsville, AL.
- Faller, K. C. (2007). *Interviewing Children about Sexual Abu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ller, K. C. (2009). Assessing for child sexual abuse: What information gather, how to weigh information, and how to make decisions about likelihood of sexual abuse. 2009 경찰청 · 법정심리학회 · 범죄심리사자격관리위원회 공동심포지움 발표논문집, 21-28.
- Firstenberg, I. (1983). *The Role of Retrieval Variability in the Interrogation of Human Memory*, UCLA Report.
- Friedrich, W. N. (1997). *Child sexual behavior inventory(CSB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Geiselman, R. E., Fisher, R. P., Firstenberg, I., Hutton, S. A., Sullivan, S. J., Avetissian, I. V., & Prosk, A. L. (1984). Enhancement of eyewitness memory: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gnitive interview.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2, 74-80.
- Johnson, M. K., & Raye, C. L. (1981). Reality monitoring. *Psychological Review*, 88, 67-85.
- Kendall-Tackett, K. A., Williams, L. M., & Finkelhor, D. (1993).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3, 164-180.
- Mandler, G. (1980). Recognizing: The judgment of previous occurrence. *psychological Review*, 87, 252 - .271.
- Malpass, R. S., & Devine, P. G. (1981). Eyewitness identification: Lineup instructions and the absence of the offend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6, 482 - 89.
- Smith, M. C. (1983). Hypnotic memory enhancement of witnesses: Does it work? *Psychological Bulletin*, 94, 387-407.
- Steele, L. C. & Faller, K. (2009). 국가아동보호센터 헌츠빌, 앨라배마 아동 법정 면담 구조. 2009 경찰청 · 법정심리학회 · 범죄심리사자격관리위원회 공동심포지움 발표논문집, 1-20.
- Vrij, A. (2000). *Detecting lies and deceit : the psychology of lying and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practice*, Chichester : John Wiley & Sons.
- Whitten, W. B. & Leonard, J. M. (1981). Directed search through autobiographical memory. *Memory & Cognition*, 9, 566-579.

첨부자료 1

I. 사건개요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남, 48세, 목사)는 교회 사택의 안방에서 아동 오○○(여, 만9세)를 사택의 방으로 불러 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 아동이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자 그 이유를 살피는 과정에서 아동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김○○는 “그런 적이 없다”, “아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가해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II. 진술조서

오○○ : 목사님이 불러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고서 가슴을 만졌어요
 조사자 : 언제 그랬는지 기억나니?
 오○○ : 정확히 며칠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일요일에 교회 갔을 때요.
 조사자 : 몇 번 그랬니?
 오○○ : 여러 번요, 근데 며칠인지 기억이 안나요, 정확히 10번 정도는 넘는거 같아요.
 교회가면 아침이나 점심때 불러서 들어갔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러셨어요.
 조사자 : 가슴을 만질 때 니 옷 위로 만졌니? 안으로 만졌니?
 오○○ : 이렇게요(자신의 윗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시늉을 한다)
 조사자 : 안으로 만졌다는 거니?
 오○○ : 그럴 때도 있고 위로 만질 때도 있고
 조사자 : 그리고 네 가슴을 만지고 또 어떻게 했니?
 오○○ : 목사님이 날 불러서 가슴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조사자 : 어디에서 목사님이 널 만지거야?
 오○○ : 목사님 방이요.
 조사자 : 어떻게 목사님 방으로 들어간 거지?
 오○○ : 목사님이 불렀어요.
 조사자 : 뭐라면서 불렀는데?
 오○○ : 이리 와 보라구요.
 조사자 : 그때 너 혼자였니?
 오○○ : 아뇨 동생이랑 같이 있었어요.
 조사자 : 그런데 어떻게 너 혼자만 들어가게 되었어?

오○○ : 목사님이 저 혼자만 따라오라고 하고 동생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조사자 :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넌 어디 있었니?

오○○ : 책상 앞에.

조사자 : 앉아 있었니? 서있었니?

오○○ : 서 있었어요.

조사자 : 목사님은?

오○○ :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조사자 : 목사님 방은 어디 있는데?

오○○ : 교회 집이 있어요. 거기요.

조사자 : 그럼 그때 그집에 목사님하고 너만 있었니?

오○○ : 아뇨. 사모님이요.

조사자 : 사모님이 누구지?

오○○ : 목사님 부인이요.

조사자 : 목사님 부인은 어디 있었는데?

오○○ : 부엌에서 밥 하고 있었는데

첨부자료 2

I. 사건개요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남, 48세, 목사)는 교회 사택의 안방에서 아동 오○○(여, 만9세)를 사택의 방으로 불러 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 아동이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자 그 이유를 살피는 과정에서 아동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김○○는 “그런 적이 없다”, “아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가해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II. 진술조서에 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1. 진술분석 보고서

(1) 논리적 구성(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나타남)

피해아동 오○○은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오○○ : 목사님이 불러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고서 가슴을 만졌어요
 조사자 : 언제 그랬는지 기억나니?
 오○○ : 정확히 며칠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일요일에 교회 갔을때요.
 조사자 : 몇 번 그랬니?
 오○○ : 여러 번요. 근데 며칠인지 기억이 안나요. 정확히 10번 정도는 넘는 거 같아요.
 교회가면 아침이나 점심때 불러서 들어갔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러셨어요.
 조사자 : 가슴을 만질 때 네 옷 위로 만졌니? 안으로 만졌니?
 오○○ : 이렇게요(자신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는 시늉을 한다)
 조사자 : 안으로 만졌다는 거니?
 오○○ : 그럴 때도 있고 위로 만질 때도 있고
 조사자 : 그리고 네 가슴을 만지고 또 어떻게 했니?
 오○○ : 목사님이 날 불러서 가슴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2) 진술 비구조화(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지만 이야기 구성요소의 일관성이 유지됨)

피해아동 오○○은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오○○ : 엄마한테 목사님이 이상한 짓 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배우기 싫다고 말한 적 있어요.
 조사자 : 이상한 짓이 뭐지?
 오○○ : 제 몸을 만지고 뽀뽀하는 거요. 목사님이 제 몸을 만지는 것 자체가 싫어요.

(3) 세부 정보 양(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묘사)

피해아동 오○○은 피해가 발생한 때, 장소, 상황,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자세히 진술하였다.

조사자 : 어디에서 목사님이 널 만지거야?
 오○○ : 목사님 방이요.
 조사자 : 어떻게 목사님 방으로 들어간 거지?
 오○○ : 목사님이 불렀어요.
 조사자 : 뭐라면서 불렀는데?
 오○○ : 이리 와 보라구요.
 조사자 : 그때 너 혼자였니?
 오○○ : 아뇨 동생이랑 같이 있었어요.
 조사자 : 그런데 어떻게 너 혼자만 들어가게 되었어?
 오○○ : 목사님이 저 혼자만 따라오라고 하고 동생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조사자 :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넌 어디 있었니?
 오○○ : 책상 앞에.
 조사자 : 앉아 있었니? 서있었니?
 오○○ : 서 있었어요.
 조사자 : 목사님은?
 오○○ :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있었구요.

(4) 맥락적 깊이(시간적 특징과 발생 당시 있었던 상황적 특징 등 사건에 대한 정보)

피해아동 오○○은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자신의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였고, 사건 당시 가해자의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던 시간적, 상황적 특징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조사자 : 목사님 방은 어디 있는데?
 오○○ : 교회 집이 있어요. 거기요.
 조사자 : 그럼 그때 그 집에 목사님하고 너만 있었니?

오○○ : 아뇨, 사모님이요.
 조사자 : 사모님이 누구지?
 오○○ : 목사님 부인이요.
 조사자 : 목사님 부인은 어디 있었는데?
 오○○ : 부엌에서 밥 하고 있었는데

(5) 상호작용(사건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해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6) 대화재현(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축어적으로 나타남)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풍부하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예쁘다”며 행위를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자 : 목사님이 너 만지면서 너한테 뭐라고 한 말 있니?
 오○○ : 예쁘다구요.
 조사자 : 그리고?
 오○○ : 예쁘다면서 이리 오라고 하고 계속 만졌어요.

(7) 예기치 않은 상황(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가해자의 범행이 중단되거나, 어렵거나, 자발적으로 종료한 내용)
 피해 아동 오○○의 진술에서 피해아동의 동생이 가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방 밖에서 피해아동을 불러 자연스럽게 가해자의 행위가 종료되었다.

조사자 : 그럼 목사님 방에서 나오게 되었어?
 오○○ : 동생이 누나 놀자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조사자 : 그때 동생이 밖에 부를 때 목사님은 어떻게 했니?
 오○○ :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소리지르고 싶었는데 문은 잠겨 있었고, 소연이 언니는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8) 일상적이지 않은 정보(사건, 사물, 사람(가해자)에 대한 독특한 세부 묘사)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해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9) 세부 정보 과잉(부가적인 내용)

피해아동 오○○의 진술을 통해 반복적인 피해를 피해보고자 평상시와 달리 교회에 가는 시간을 늦추거나 보호자와 함께 갔음을 알 수 있다.

조사자 : 목사님이 너를 만진 후에 교회는 계속 나갔니?
 오○○ : 네.
 조사자 : 왜 계속 나갔니?
 오○○ : 식구들이 다 교회 가니깐 안 간다고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말했어요. 교회가기 싫다고.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 안가고 할머니 댁에 가서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랑 같이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동생은 먼저 교회에 가고, 그렇게 한 거는 아침에 일찍 가면 목사님이 날 불러서 가슴 만지고 뽀뽀를 하니까.

(10) 이해하지 못한 정보(피해자는 알 수 없으나, 면담자는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진술)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해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1) 외적 사실 연합(성적인 관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이야기)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해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2) 주관적 경험(자신의 주관적인 인지 상태, 정서 상태를 표현)

피해아동 오○○은 사건 당시 저항하고 싶었던 자신의 감정과 사건에 대한 정서를 진술하였다.

(13) 가해자 정신상태 추정(가해자의 정신상태를 추정하는 내용)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해당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4) 자발적 수정/첨가(자신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수정하거나 첨가하는 내용)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해당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5) 기억 부족 시인(진술의 일부분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표현)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는 자신의 진술의 일부분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표현한다.

오○○ : 목사님이 불러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고서 가슴을 만졌어요.
 조사자 : 언제 그랬는지 기억나니?
 오○○ : 정확히 며칠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일요일에 교회 갔을때요.
 조사자 : 몇 번 그랬니?
 오○○ : 여러 번요. 근데 며칠인지 기억이 안나요. 정확히 10번 정도는 넘는 거 같아요.
 교회가면 아침이나 점심때 불러서 들어갔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러셨어요.

(16) 자신의 진술 의심(진술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언급)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해당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7) 자기 비난(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등의 진술)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해당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8) 가해자 용서(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내용)

피해아동 오○○의 진술에서 해당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9) 전형적 범죄 특징 진술(동일한 유형의 사건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가해자 김○○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아동 오○○에게 “예뻐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애정과 부적절한 성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서 아동성폭력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총평

피해아동 오○○은 가해자, 사건발생시점, 장소, 가해자의 행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동은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답변하였으며, 사건 당시 “소리 지르고 싶었다”, “기분 나쁘다” 등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해당 아동은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는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아동 오○○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바, 총점 16점으로 아동 오○○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자신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아동 오○○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편적인 아동의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만6-7세 정도가 되면 혼란되지 않는 인지능력이 생겨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Criteria - Based Content Analysis)은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술분석 방법이다(Vrij, 2000). CBCA는 5개의 범주에 19개의 하위 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인지적 능력과 동기적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한다. 개별 준거들은 진술의 진실성 지표로서 허위로 꾸며낸 진술보다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총점 38점 중 19점 이상이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자료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첨부자료 4

추가 설문지

추가 1. 진술분석이 첨부된 자료에서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추가 2. 진술분석의 자료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추가 3. 피고인의 행위를 판결하는데 진술분석 자료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Abstract

Problems of Investigation Procedure of Sex Crime against Children: Applicability of Statement Validity Analysis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Soo Jung Lee

This paper first investigated various statistic records on the sex crime against children in order to confirm whether its occurrence should increase. Also, recent judicial policies against this crime and attempted to find out where the flaws of policies, not to reduce sex crimes against children. Since the problems were concluded to exist in investigation system, it was suggested to how to resolve this problem. In this study recommended statement validity analysis performed by experts on victims' report at the investigation stage. Finally, opinions of 13 judges were gathered and analysed on applicability of experts' statement validity analysis. All of them reported statement validity analysis might be helpful for their judicial decision making.

Key words: sex crime against children, statement validity analysis, expert testimony

■ 논문 접수일 : 2009년 08월 09일 ■
■ 심사 완료일 : 2009년 08월 20일 ■
■ 게재 확정일 : 2009년 09월 05일 ■